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
1. 보험급여과-376(2020.1.26.), 462(2020.1.29.), 485(2020.1.30), 597(2020.2.26.), 922(2020.2.24.), 1066(2020.3.3.), 1642(2020.4.13.), 1263(2022.3.13.) 관련입니다.
2.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변경사항 : '23. 6. 1. 진료분부터 적용

구분	기존	변경
대상 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 상 확진환자 - 코로나19 의심환자 *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-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-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	-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 상 확진환자
산정 방법	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	적용 종료

*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 참고

붙임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

주무관 **박혜진** 보건사무관 **배운영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3. 6. 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624 (2023. 6. 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7 / ellenpark12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